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 · 주의 요구

제 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○○○○시

훈계대상자 ○○○○시 ○○○○관 ○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○○○○실 지방○○○○)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) ○○○은 2015. 1. 12.부터 2015. 12. 31.까지 ○○○담당관실(전 ○○○○○관실)에서 ‘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’을 추진하는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4장제8절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,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.

○○○○○시(○○○○○관실)에서는 “2015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” 사업¹⁾ 추진 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매월 유지보수 추진실적을 제출받고 사업담당자가 당초 계약된 내용과 일치되게 사업을 이행하는지 확인한

1) 사업기간 : 2015. 2월 ~ 2016. 12월(장기계속계약), 사업비 : 1,348,127,350원

후 유지보수료를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으나, 사업자가 매월 제출한 유지보수 추진실적에는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 중 추가로 제안한 ①help desk S/W 개선 및 무상유지보수지원(1,500만원 상당), ②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튜닝(1,000만원 상당), ③네트워크 분석 장비를 이용한 네트워크 및 보안 컨설팅(1,000만원상당), ④웹접근성 컨설팅(2,000만원 상당), ⑤Google analytics를 이용한 웹로그 분석(1,000만원 상당)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, 사업담당자는 최초 계약 시 [붙임]의 추가협상이행서 내용으로 대체하여 협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제안 사항(①~⑤)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체에서 매월 제출한 실적에 대하여 단순히 검사만 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였다.

또한 [붙임]의 추가협상이행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최초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 중 추가로 제안한 내용을 추가협상이행서([붙임])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협상내용도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,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제안서의 추가제안내용에 대하여 대체하여 과업이 이행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,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○○○○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앞으로 계약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.